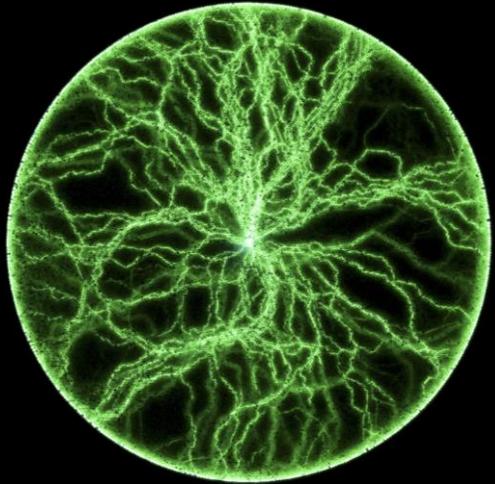


세무뉴스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제5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4월



배경

2021년 04월 19일 정부는 2021년에 부가가치세 ("VAT"), 법인소득세 ("CIT"), 개인소득세 ("PIT") 및 토지 임대료의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제52/2021/ND-CP호 시행령 ("제52호 시행령")을 공표했다. 제52호 시행령은 2021년 04월 19일부터 발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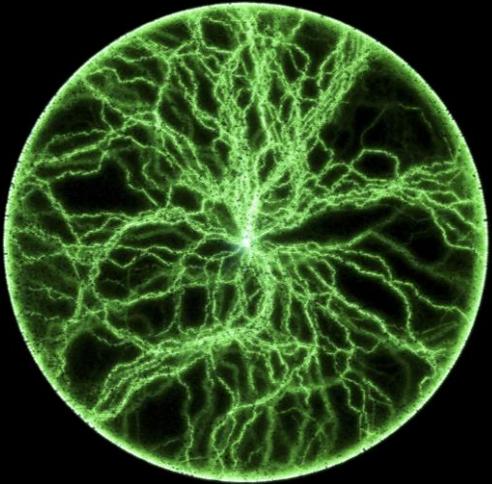
본 뉴스에서 제52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제41/2020/ND-CP호 시행령 ("제41호 시행령")와 대비 일부 대상을 추가한다;
2. 납세 기한 연장
 - i. 기업 및 단체의 경우: VAT 및 CIT 납부 기한 연장
 - ii. 개인 및 가족 사업자의 경우: VAT 및 PIT 납부 기한 연장
3. 2021년의 1차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4. 연장 절차:
 - i.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2021년 7월 30일이다.
 - ii. 본 시행령에 따라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 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41호 시행령에 의한 규정상 연장된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및 해당 연체이자 (있을 경우)를 국고 예산에 2021년 07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21년 4월



1. 적용 대상

i. 다음과 같은 경제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개인 및 가족사업자:

생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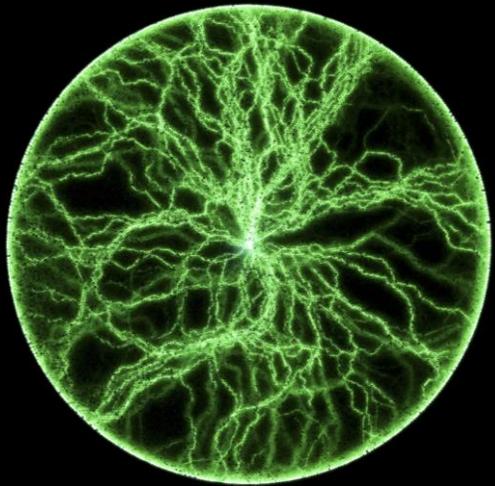
- 농업, 임업 및 수산업;
- 식품 제조 및 가공; 직조, 의류 상품 생산; 가죽 및 관련제품의 제조;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코르크 생산; 짚 및 격자재로 한 상품 제조;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생산; 금속 제조, 가공; 금속 처리 및 코팅;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제조;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가구생산;
- 건설업;
- 출판 활동, 영화 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음악 녹음 및 출판 활동; (*)
- 석유 및 천연가스 개척 (계약 또는 협정에 따라 석유, 콘덴세이트, 천연 가스에 대한 CIT 연장이 없음) (*);
- 음료 생산; 인쇄, 복사; 석탄 생산, 정제된 석유 제품 생산; 화학 생산 및 화학 제품 생산; 조립식 금속 제품 생산 (기계 및 장비 제외); 오토바이 생산; 기계 및 장비의 수리, 유지 보수 및 설치; (*)
- 배수 및 폐수 처리. (*)

사업 분야

- 창고, 운송 및 관련 지원 활동; 숙박 및 케이터링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의료 및 사회 지원 활동; 부동산 사업활동;
- 근로, 취업활동; 여행사들의 활동, 관광투어 개최 및 홍보의 관련된 지원 서비스;
- 창작예술 및 오락활동;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영화 상영 활동;
- 라디오 및 텔레비전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와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 및 기타 활동; 정보 서비스 활동; (*)
- 채굴 지원 서비스 활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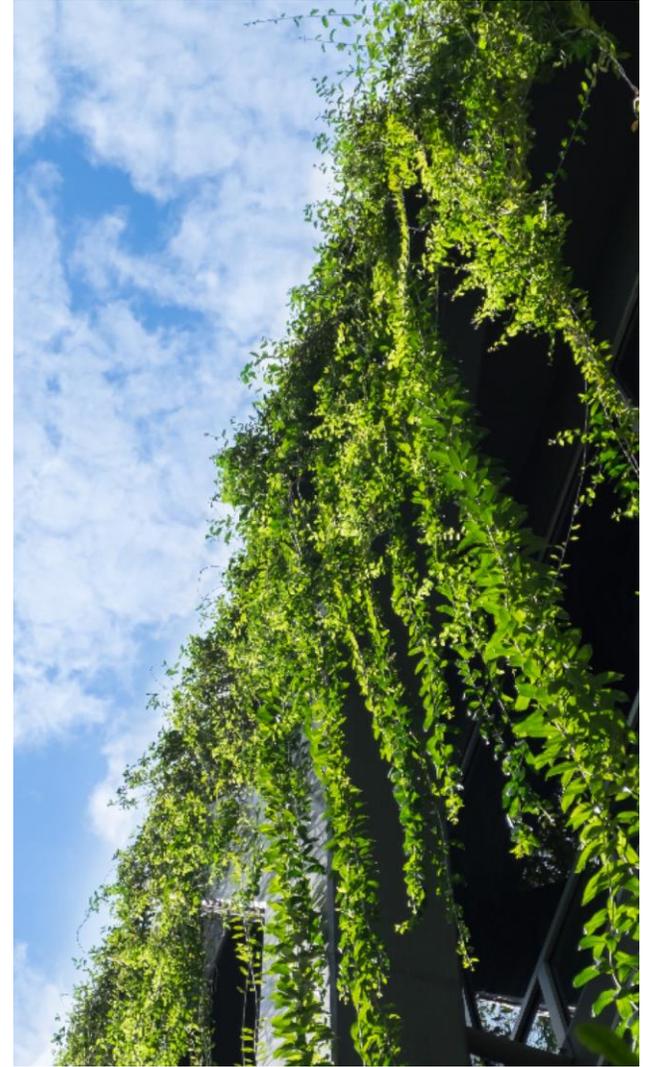
(*) 제41/2020/ND-CP호 시행령에 따라 추가된 대상

2021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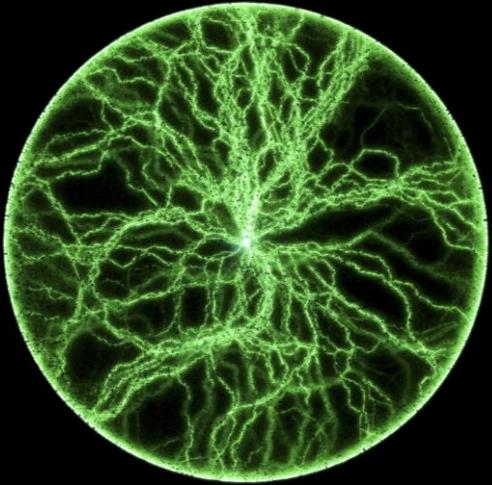
1. 적용 대상 (cont'd)

- ii. 정부의 2015년11월03일 제111/2015/ND-CP호 시행령에 따라 발전 우선을 지정된 지원산업 제품; 2025년 및 2035년까지의 비전으로 베트남이 기계 산업 발전 전략을 승인한 정부의 2018년03월15일 제319/QD-TTg호 결정에 따라 중점 기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단체, 개인 및 가족사업자;
- iii. 제04/2017/QH14호 중소기업 지원 법령 및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법령의 일부 사항을 자세히 규정한 2018년03월11일 제39/2018/ND-CP호 시행령에 따라 확인된 소기업 및 초소기업;
- iv. 베트남 국가 은행 ("SBV")의 규정에 따라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단체 및 개인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수행하는 외국 은행의 지점, 신용 기관.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제5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4월



2. 납세 기한 연장

i. 기업 및 단체

VAT 납부기한 연장 (수입 VAT 제외):

- 월간 신고: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과세 기간의 경우 5개월로 연장한다. 2021년 7월과 8월 과세 기간의 경우 각각 4개월과 3개월로 연장한다.
- 분기별 신고 : 2021년 1분기, 2분기 과세 기간의 경우 5개월로 연장한다.
- 연장 가능한 VAT금액은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할당된 세액 및 발생할 때마다 매회 납부세액을 포함한다.

CIT 납부기한 연장

- 2021 과세연도에 1분기, 2분기의 일시 납부세액의 경우 3개월로 연장한다.
- 연장 대상인 경제분야에 해당하는 생산 및 사업 활동이 없는 지점, 부속 단위에 적용되지 않다.

ii. 개인 및 가족사업자

- 2021년의 VAT 및 PIT 납부의무는 2021년12월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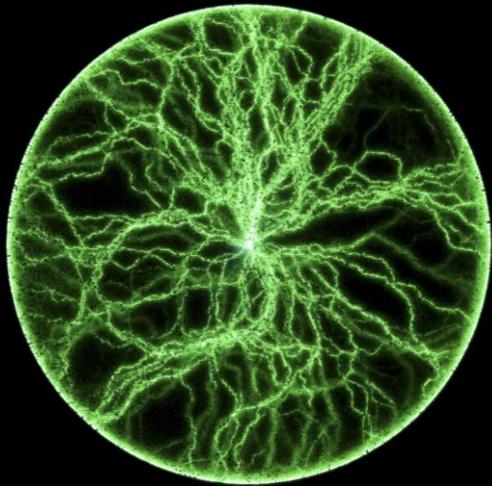
3.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2021년에 토지 임대료 1차 납부 기한은 2021년5월31일부터 6개월로 연장된다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제5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4월



4. 연장 절차

- i. 납세자는 2021년07월30일까지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연장 신청서를 조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ii. 본 시행령에 따라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 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41호 시행령에 의한 규정상 연장된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및 해당 연체이자 (있을 경우)를 국고 예산에 2021년07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iii. 납세자가 여러 지역의 관리 세무국에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국은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연장 신청서를 복사하여 관련 세무국에 발송할 의무가 있다.
- iv. 연장 기간동안 연장이 승인된 세금, 임대료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VIETNAM**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